

# 大法院 判例를 통해 본

##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

- .....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 .....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의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 .....모아 分析해 보았다.....<編輯者 註>.....○

### ● 第 21 回 ●

<前號에서 계속>

### 同一類似

區分 事件 및 日字	請求趣旨	名稱	審決 또는 判決	適用法條文 (審決·判決理由)
76抗告(절) 362 (76. 9. 3.) 77후 38 (77.10.15)	75商標出願 2145 拒絕不服 75商標出願 2145 拒絕不服	第18類 주방용 품과 일용품	不成立 (77. 9. 19) 原審破棄 還 送 (77. 11. 2)	商標法 第 9條 第1項 第7號 (他人商標 와 稱號 및 觀念類似하 다) (類似하지 않다)

本願商標 :



(出願 75-2145號)

引用商標 :



(登錄 16891)

### ● 判決內容

原審은 兩商標에서 略稱되는 “HOME”에 의하여 兩商標의 稱號 및 觀念이 同--하다는 趣旨이나, 本願商標에는 英文字로 “SUN HOME”이 있는 반면에 引用商標에는 英文字 “HOME SERVICE”, 漢文字 “女苑”이

라고 되어 있어서 그 稱號와 觀念이 반드시 同一한 것 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原審決은 양자의 商標를 全體의으로 대비하지 아니 하고, 다만 적당히 略稱되는 境遇만을 가상하여 대비 한듯 하나 이러한 대비만으로 兩商標의 同一與否를 판 갈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論旨은 이유있고, 原審決은 商標의 同一 또는 類似에 關한 법리를 옳게 하였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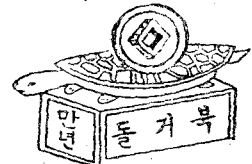
區分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8후 17	78. 10. 31 (棄 却)	(第18類) 알루미늄솔, 대야, 양푼, 바켓스, 다 라이, 주전 자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7號 (他人의 先登 錄商標와 類 似)
77抗告(절) 191 (75-7834)	78. 7. 22 (不成立)		

本願商標 :



(出願 75-7834)

引用商標 :



(登錄 30756)

### ● 判決內容

原審은 本願商標보다 앞서 1973.1.11 出願되어 같은

해 5.8 第30756號로 登錄된 原審 引用商標와 그 外觀, 稱號 및 觀念面에서 대비하여 볼 때

첫째, 두 商標는 다같이 中央部의 거북圖形과 “돌거북” 또는 “거북표”의 文字가 요부를 이루고 있어 그 外觀이 類似하고

둘째, 本願商標는 “거북표”·“돌거북표”·“만년거북표” 등으로 引用商標는 “거북표”로 자기 號稱되어 그 號稱면에서도 類似하고

셋째, 두 商標는 다같이 거북을 연상케 하여 그 觀念에 있어서도 類似하여 결국 양 商標는 類似하다고 判斷하였다. 記錄에 의하여 양 商標를 대비하여 보니 原審의 위와 같은 判斷은 適法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商標의 類似性에 관한 審本基準을 그릇친 잘못이 없다.

第1點에 대하여

上告理由要旨는 本願商標와 同一한 표장으로서 本件 特許以後인 76.6.28에 出願된 商標는 出願公告하고서 그것보다 먼저 出願된 本願商標에 대하여는 登錄을 拒絕한 것은 商標에 관한 先願우선주의를 規定한 商標法 第13條 1項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原告의 本願商標는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關하여 이미 73.1.11 出願되어 같은해 5.8 登錄된 引用商標보다 후인 75.11.22 出願하였음이 記錄上 明白하므로 후에 出願된 本願商標를 위 引用商標와 類似한 商標라 하여 거절사정 한 조치는 적법하고 또 先出願되어 유효하게 登錄된 引用商標가 있는 이상 論旨는 이유없다.

區分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9후 19	79. 9. 11 (棄 却)	(第48類)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7號
77抗告(절) 380 (75-7849)	79. 2. 13 (不成立)	絲 類	(稱號類似)

本願商標 :

TEVIRON

(出願 75-7849)

引用商標 :

TAPILON

● 判決內容

TEVIRON은 先出願된 引用商標 TAPILON과 그 稱號에 있어 類似하다. 商標法 第9條 1項 7號에 해당한 것이라고 判斷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審理未盡이나 法理오해가 없다.

商標의 類似性 여부를 서로 同一한 程度가 아니라 하더라도 去來의 通念上 匹차 오인 混同될 餘려가 있을 程度로 근사한 것을 말한다고 볼 때 이 事件 양 商標의 발음이 “테비론”·“테피론”으로서 強弱에 약간의 差異가 있다고 해서 類似性이 없는 것이라 함은 理由 없다. 그리고 審判請求人의 出願商標가 이른바 저명商標로서 여러 外國에 登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原審의 判斷이 위법이라 함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양 商標가 같은 日本國에서 登錄이 許容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日本間에는 言語風習이 다르고 商品이 유통구조가 달라 양 商標의 類似性 判斷이 日本과 같을 수 없다고 한 原審判斷 또한 상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계속>

本 會 新 刊 案 內

中共 工業所有權 制度

규 격 : 국관 296면

편 역 : 한국발명특허협회 조사부

가 격 : 5,000원

(案) 本會 發明振興事業(內)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 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 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어오니 많은 參與바랍니다.

- ◎ 發明獎勵館의 發明品無料展示 및 企業化 斡旋
  -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企業 選定表彰
  - ◎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 優秀發明의 金融支援推薦
  - ◎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
  - ◎ 發明特許品 流通販賣展示會 開催
-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 바랍니다.